



한방추나요법 진료비 실태와 문제점

이정택 연구위원

최근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은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임.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의료기관내 진료비 격차가 크며, 지역별로는 부산·서울·경기 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한방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보장 추진을 위해서는 한방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 비급여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한방진료비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한방추나요법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함.

- 특히, 한방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¹⁾가 정해져 있음에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재 양·한방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항목으로 조사됨.²⁾
- 이에 본고에서는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별·지역별 진료비 실태를 살펴보고, 한방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봄.

■ 심평원(2016)³⁾ 발표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진료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 수준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높게 책정

1) 한방추나요법은 한방 침약, 한방 약침술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항목임.
 2) 양·한방 29개 조사대상 비급여 항목 중에서 한방추나요법(복잡)의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큰 항목임(KIRI 리포트 제410호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12.1) “비급여 진료비 공개” ; 150병상 초과 2,014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32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을 조사함.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진료비 격차도 큼.

- 한방추나요법(단순) 진료건별 진료비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6배(5천원~3만원)인 반면, 한방병원은 80배(1천원~8만원)의 격차를 나타냄.⁴⁾

〈표 1〉 의료기관 종별 한방추나요법 평균 최대진료비 및 최소진료비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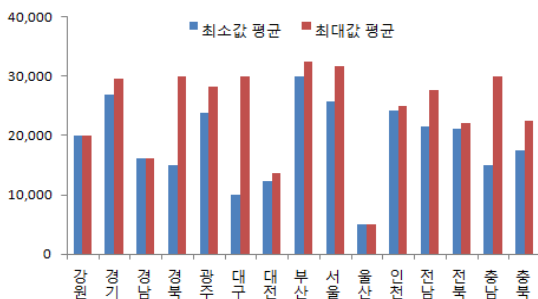
구분	관측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단순	155	17	14	19	17	31	29	27	23
복합	131	18	16	30	28	40	33	46	38

주: 1) 개별 의료기관은 한방추나요법(단순, 복합)에 책정했던 최소진료비와 최대진료비를 동시에 공개하였으며, 최대·최소는 각각 의료기관 종별 최대진료비의 평균과 최소진료비의 평균을 의미함.
 2) 단순: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가동시켜 주는 치료임.
 3) 복잡: 기기 등을 이용하여 추간판 및 관절을 늘려주어 압박을 해소시켜 주거나, 관절의 변위를 교정시켜 주는 치료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방추나요법의 진료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부산·서울·경기 지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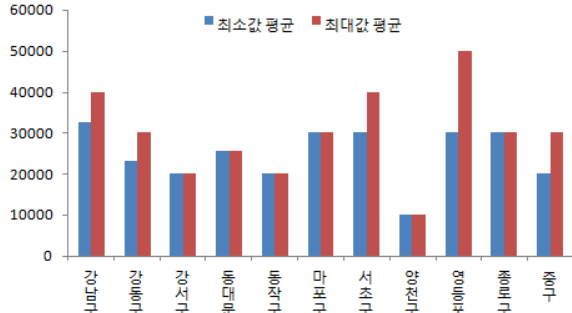
- 서울 소재 15개 한방병원의 한방추나요법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1회당 평균진료비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7만원으로 7배의 진료비 차이가 나타남.⁵⁾
- 평균적으로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가 평균진료비 상위를 차지하였음.

〈그림 1〉 전국 한방병원의 지역별 추나요법(단순) 진료비 (단위: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2〉 서울 소재 한방병원의 지역별 추나요법(단순) 진료비 (단위: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요양병원의 경우 약 7배(7천원~5만원), 병원급은 약 0.3배(1만5천원~2만원)임.
 5) 한방추나요법(복합)도 지역별 진료비 분석에서 한방추나요법(단순)과 비슷한 패턴을 보임.

■ 한편 한방추나요법은 한방첩약, 한방탕전료, 한방물리요법등과 함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제외되고 있음.

-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를 통해 한방·치과의 경우 비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함.
 - 양방에 비해 한방 비급여 진료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제외된 주요 이유임.⁶⁾
- 2014년 치료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실손보험에서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⁷⁾
 - 일부 보험사에서 한방 비급여 보장 정액형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으나, 한방의 경우 진료비의 편차가 크고, 표준화가 미비 및 관련 통계 부족으로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 주긴 어려움.

■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방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비급여의 의료기관별 가격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방추나요법의 경우 의료진의 시술시간이나 환자의 부상 정도·부위에 따라 진료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진료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가 필요함. **kiri**

6) KIRI 리포트 제364호

7) 2015. 12월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한의업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을 발표하여,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